

거창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3. 9

○ 제출자 : 이현영 의원 외 3

나. 회부일자 : 1999. 3. 16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 3. 18. 상정의결)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포상대상자 중 “국가고시합격자”는 모든 국가고시 합격자로 그 범위가 애매하고, “박사학위취득자”는 그 범위가 방대하여 포상을 남발한다는 여론이 있을 뿐 아니라, 의회상의 기금이 고갈상태로 시행에 문제점이 있으며,

○ 개원기념행사가 타 시·군과 달라 이를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6조(의회상)의 “국가고시 합격자, 박사학위 취득자”를 “국가 및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로 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는 삭제
- 제12조의 “개원기념일(4월 15일)을 ”개원기념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의회 내부규칙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위원들이 검토협의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생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의회상 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과 애로사항을 바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규칙 개정안은
- 규칙개정 이전, 여러 차례 전체 의원회의에서 협의검토한 내용으로서 의회상 수상 대상자의 요건과 포상시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본 규칙안은 향후 의회상 제도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3. 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3. 16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 3.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사유

- 조직개편 이후 자치단체마다 조직운용 관련조례가 다양하게 운용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 각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
- 조직을 사무과와 전문위원으로 구분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전문을 개정하여 제명을 거창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바꾸고, 전문위원을 사무과와 별도로 규정하여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며 적합한 조례안임
- 그러나 본 조례안 제4조에 별도로 규정한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에는,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전문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의 의안을 담당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걱정 여부의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의회와 사전협의를 있었는가?
- 답변 :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음.

- 질의 : 향후 타 부서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답변 : 향후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겠음
- 질의 : 수정안에 타당성이 있는가?
- 답변 : 거창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본 조례안에 규정하였는데, 전문위원은 특별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수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가. 찬성

- 수정안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찬성

나. 반대

- 원안 중 제4조가 타당성이 없으므로 원안에 반대

6. 수정안 요지

○ 제안이유

의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두는

직위로서, 전문위원이 직무상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지 않고 의장을 보좌토록 하며 지휘를 받게 하는 개정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함.

○ 수정내용

개 정 안	수정동의(수정안)
<p>제4조(전문위원) ① <u>의회의 의장</u>을 보좌하고, <u>의장</u>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p> <p>② 전문위원은 <u>의안</u>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p>	<p>제4조(전문위원) ① <u>담당특별위원회</u>의 <u>위원장</u> ……., <u>위원장</u>…………….</p> <p>…………….</p> <p>② …… <u>위원회의 의안</u>……………</p> <p>….</p>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전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이름을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바꾸고, 전문위원을 사무과와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 형식이나 조례안의 체계에 있어 종전의 조례보다 발전된 타당하고 적합한 조례안이 것으로 심사

- 그러나 본 조례안 제4조에 별도로 규정한 전문위원에 관한 조항에는,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두는 공무원이므로, 이 조항을, 상임위원회가 없는 거창군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의 의안을 담당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 본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심사의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3. 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3. 16.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
위원회(1999. 3.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
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
고,

○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
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정함.

나. 주요골자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 기간연장 및 정년
연장 신청조항 삭제(제8조 제3항 및 제4항)

- 직권면직 요건인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6월 이상을 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조정 (제10조)
-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사유 세분화(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정함
-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찬성함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령과 조례모델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 조례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3. 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3. 16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 3.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사유

-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로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조정시 각종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의회조례 심의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 행정조직운용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거창군보건소조례
-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 거창군수송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 거창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거창군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로써 여러가지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를 한데 통합하여 운용하게 함으로써 조례관리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고 적합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조례 모델 표준안에 거창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개정되는 종전보다 진일보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기존 조례와 관련된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하자나 오류가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 질의 : 행정자치부 모델표준안에도 없고,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부군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 : 부군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군 직제 조례상에서 부군수에 관한 업무규정이 있으므로, 도의 조례를 참고로 하여 해당 규정을 삽입했음
- 질의 :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조직관련 조례를 한데 뭉쳐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 본 조례에 군의 각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한 내용이 같은 조례상에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를 통합할 방안은 없는가?
- 답변 : 향후 조례 개정시 읍·면사무소 위치를 규정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원안이 적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거창군 행정조직과 관련한 조례는 개별조례로써 여러가지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를 한데 통합하여 운용하게 함으로써 조례 관리 운영과 의회 조례안 심사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은 적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심사.
- 또,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작성, 시달한 조례 모델 표준안을 기준하여 하여 거창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개정되는 종전보다 진일보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기존 조례와 관련된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하자나 오류가 없는 조례안이었음
- 그러나 거창군의 행정기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부분에

있어,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별표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고,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통일성이 없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시 검토, 반영토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3. 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3. 16.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 특별
위원회 (1999. 3.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한 조례 통합으로 거창군종합
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거창군 행정기구설
치 조례로 흡수됨에 따라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로 개정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한 조례통합으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흡수됨에 따라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운영하기 위함
- 제명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획은 있는가?
- 답변 : 민간위탁계획이 있음
- 질의 : 민간위탁계획의 시기는 언제인가?
- 답변 : 2000년도로 용역의뢰 계획중임

5. 찬성요지

가. 찬성

-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찬성함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한 조례 통합으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흡수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운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모델 표준안을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이 현실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3. 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3. 16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99. 3.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조직개편 이후 자치단체마다 조직운용 관련조례가 다양하게 운용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 각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정원조례 근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 추가
- 소속기관을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로 구분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과
- 정원의 총수를 제2조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포괄적인 정원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분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3월 12일자로 임명된 지방행정사무관(시보)의 5급 1명 초과 인원에 대해 임명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 답변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우수인력 확보계획 지침에 의하여 도내 21명의 지방고시 합격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거창군의 경우 시보기간 1년은 교육과 수습기간을 거쳐 2000년 3월부터 2년간은 의무기간으로 근무하되, 한시적 정원으로 관리하게 됨.

- 질의 : 정부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중 85명을 감축하였는데, '98년도 감축실적과 '99년도에서 2000년도 감축계획은?
- 답변 : 감축된 85명 중 '98년도에 당초 결원 24명, 정년 퇴직 21명, 명예퇴직 5명, 조기퇴직 2명, 공로연수 15명 등, 67명을 정리하고 '99년도에는 5급은 40년생, 6급 이하는 43년생까지 14명을 현 부서에 대기 조치하고, 남은 과원에 대해서는 명·조퇴 희망자를 처리하면 2000년도 말까지는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가. 찬성

- 경상남도 조례모델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된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함이 옳다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임.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과 정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 그 근거를 명시하고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세분화하여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3. 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3. 16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 3. 18.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 15982호), 동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5호)이 '98.12.31 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 수출 돈 가공공장 규칙에 따른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인상함(1,000원⇒3,000원)
(안 제21조)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8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0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4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500씨씨 이하	20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000씨씨 초과	220원

- 자동차세 연납규정의 신설(안 제39조제3항)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 돼지에 대한 도축세 세율인하 : 10/1,000 ⇒ 5/1,000(부칙
제2항)
- 용어의 정의 명확화 : 4개 조문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9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경상남도 표준 준칙안, 그리고 지방세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적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세법개정에 의해 소액부 징수 2,000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고, 주민세 징수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가 3,206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 이웃 군부와의 형평성과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로써 판단,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0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대한 조세저항도 최소화되도록 홍보에 가일층 노력할 계획임.
- 질의 : 부칙 제2항 도축세 세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인하하게 된 배경과 도축물량 유입 시·군은?

- 답변 : 수출업체인 우강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창군과 합천군, 함양군, 3개 군이 경합이 되면서 조건이 좋은 곳을 택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현행 1000분의 10을 1000분의 5로 인하해 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고, 도축물 유입 시·군은 함양, 합천, 고성, 창녕, 의령, 무주군, 김천시, 안동시에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질의 : 별장이나 고급오락실,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부과되는 토지는 몇 건이나 되는지?
- 답변 : '97년도 5건에 4,645만 원 부과하였고, '98년도에는 고급오락장 중과세 규정의 위헌 판결로 부과실적은 없으나, '98년도 정기국회에서 고급오락장 중과세 규정에 대한 보완 개정으로, '99년도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후 부과할 계획임.
- 질의 : 타 시·군 도축물량 유입으로 인한 축산폐수 문제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폐수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매일 지도점검하고, 위배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임.

- 질의 : 승용자동차 경우 2,000cc 이하보다 2,000cc 이상 소유자에게는 인하혜택을 많이 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 답변 : 2,000cc 이상 자동차 현황은 국산 짚차 525대, 국산 승용 182대, 외산승용 19대 등, 726대로 2억 9,654만 1,000원이 자체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서민층 차량보다 2,000cc 이상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상부에 시정, 건의 조치할 계획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자동차 세율 축소 내용과 도축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토론이 있었으나,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된 내용이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었음.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8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한 주민세 개인 균등할이 소액부징수 한도액이 2,000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현재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안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세 세율구조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안과 자동차세 징수방법에서도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 2회 납부를 분기납으로 세분화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 부칙 제2항, 도축세 세율에 관한 특례 규정은 지방세법 제3조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도축장 활성화와 축산농가 육성 및 물류비용 절감, 그리고 인근 시·군 도축물량 유입으로 도축세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8. 소수의견 요지

- 자동차세율을 현재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시행으로 인하여 2,000cc 이하 서민차량의 인하 혜택보다는 2,000cc 이상 부유층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는 불합리점이 있다는 의견과,
- 인근 시·군 돼지 도축물량 유입으로 도축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속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자동차 세율 5단계 축소개정으로 서민용 자동차의 혜택보다 부유층 소유자동차가 혜택을 많이 받는 불합리한 점은 상부에 건의하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3. 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3. 16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 3. 18.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 지원함으로써 주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4조 제목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함(안 제4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안제1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안제20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함.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20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

단지내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달된 경상남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된 것으로, 상위법 저촉과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관내 미분양 아파트의 세대는 얼마나 되며, 그 내력에 대해서 답변 바람
- 답변 : 관내 49세대로 대우아파트 5세대, 신세계아파트 2세대, 공작아파트 6세대, 제일라이프주택 36세대가 있으며, 재산세 감면 규모는 67만 1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됨.

- 질의 :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서 자동차로 감면혜택을 확대실시하는 이유는?
- 답변 : 지난 제51회 임시회기중 장애인소유의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최초 취득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번에는 조 제목과 그 내용이 불합리 하여 개정하게 된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상위법인 지방세법령 개정과 경상남도 표준준칙안에 의해 개정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전체 위원회의 의견임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지원함으로써,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법인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경상남도 표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